

#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’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

의안 번호	51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4. 13.

제안자 : 남양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’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에 의거 2021년도 재산세 감면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근거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천재지변 등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,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

나.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[지방세특례제도과-531(2020. 3. 10.)호] 사회재난 중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 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

## 3. 감면안(2021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한시적 감면)

가. 대상자 : 임차인에게 상가·건물의 임대료를 기간 내 인하한 임대인

- 1) 임대인)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
- 2) 임차인)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 또는 비영리단체

나. 인하기간 : 2021. 1. 1. ~ 2021. 10. 31.

☞ 접수) 2021. 11. 감면 및 환급) 2021. 12.

다. 감면방법

- 1) 대상세목 : 건축물분 재산세
- 2) 임대료 인하액의 85%까지 인정  
☞ 2021년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(건축물분)부과액의 85% 한도
- 3)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 경우, 고급오락장업은 감면 제외
  - 가) 특수관계 : 직계존비속,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  - 나)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4호 단서 개정 시 고급오락장 포함
- 4) 직권 또는 신청(기간 내 미신청 시 감면 제외)에 의거 감면